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722호
2. 발 의 자 : 최유희 의원
3. 발의일자 : 2024년 4월 3일
4.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II. 제안이유

-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 활동 보호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학교 방문자가 사전에 학교 방문 사실 등을 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상위법령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장에게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사

등에 따른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조).

2. 교육감에게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새로 신설되는 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4.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 교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8조)
5.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새로 신설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6. 교육감은 학교 방문자가 사전에 방문 사실과 목적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제3항 신설).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입법예고(2024. 4. 12. ~ 4. 16.)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최윤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722호로 발의되어 2024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28일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교육감이 효과적인 교육활동 보호 시책 추진을 위해 학교 방문 예약 시스템을 구축·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과 학생의 담임교사 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2023년 9월 국회와 중앙정부,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4법’의 입법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¹⁾
- 국회는 동 합의를 근거로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4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여 2023년 9월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이 2023년 9월 27일부터, 개정 「교원지위법」은 2024년 3월 28일부터²⁾ 시행되었습니다.³⁾

1) 교육부 보도자료(2023.9.1.일자), “교권보호 관련 입법 법안소위 합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예정”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124> (검색일 2024-4-11)

[표-1]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내용⁴⁾

개정법률명	주요 개정 내용
교육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의 교원과 학교의 교육·지도 존중 의무 명시(제13조제3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등 보호자의 교직원·학생 인권 침해 금지 및 교육활동 협력 의무 명시(제18조의5 신설) •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제20조제1항 개정) • 학교와 학교장의 교원 개인정보 보호 책무 강화(제20조의3 신설)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 상 일부 금지행위 적용 제외(제20조의2제2항 신설)
유아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의 교직원·유아 인권 침해 및 교육활동, 돌봄활동 협력 의무 규정(제21조의4 신설) • 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제21조제1항 개정) • 유치원과 원장의 교원 개인정보 보호 책무 강화(제21조의5 신설) • 교원의 생활지도권 명시 및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 상 일부 금지행위 적용 제외(제21조의3제2항 신설)
교원지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 방지(제6조제3항 신설) •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제17조 신설)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고죄 등을 추가(제19조 신설) • 학교장과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및 피해교원 보호, 회복 지원 확대(제22조, 제27조제1항, 같은조제3항, 제28조 신설 등) • 5년 단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제14조~제15조),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폐지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제18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책임 강화(제25조) 등

○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원지위법」을 포함하여 ‘교권 보호 4법’의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에 맞춰 조례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의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교원지위법」 개정 사항 중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6조제3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었으며, 나머지 조항은 6개월이 경과된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음.
 3) 본문에서 언급되는 교권 보호 4법은 ① 「교육기본법」(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② 「유아교육법」(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③ 「초·중등교육법」(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④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를 의미함. 이하 같음.
 4) 이덕난(2023.11.2.),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NARS 현안분석> 제303호, 국회입법조사처를 정리한 것임.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과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제5조에서 학생생활지도, 제6조에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 각각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조치사항,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안 제10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제11조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 제13조에서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제14조에서 보호자 등의 민원 통합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학교 출입 제한 등의 조치, 제16조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제18조에서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제19조에서 시행규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주체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의 적용 주체를 교육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사 및 피해 회복에 있어 발생하는 교육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학교장에서 교육장에게로 이관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는 내용의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대응하여 현행 조문에서 교육장의 책무를 새롭게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 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와 운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검토(안 제7조, 제8조, 제12조)

○ 안 제7조는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각각 근거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12조는 「교원지위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두 조문은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각각 관할청 내에 설치하는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개정된 것입니다.

○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8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교육감과 학교장이 시행해야 할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원에 대한 보호와 치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등과의 분리 조치, 가해 학생 등에 대한 형사 고발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 역시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과 종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는바, 개정에 따른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출입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검토(안 제15조)
- 안 제15조제3항은 학교 방문자가 사전에 학교 방문 사실과 목적 등을 학교에 알리는 시스템을 교육감이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활동 보호 시책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학교 방문자 관리에 따른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2023년 11월부터 관내 68개교를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바, 동 조문의 신설을 통해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2]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현황⁵⁾

- 대상 학교: 공.사립 유.초.중.고.특수 68개교
- 운영 기간: 2023. 11. 29. ~ 2024. 9. 28.(10개월)
 - 시스템 점검 및 홍보기간 : 2023. 11. 29. ~ 2023. 12. 15.
 - 정식 운영 기간: 2023. 12. 16. ~ 2024. 9. 28.
- 대국민 홍보 실시: 보도자료, 동영상, SNS 게시 등
- 소요예산: 금20,118,000원(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 시스템 개요
 - (채널 검색) 카카오채널에서 학교명 검색 →
 - (동의 절차) 학교 출입 수칙 및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
 - (방문 예약) 방문대상, 목적 및 원하는 날짜 선택(방문 2~5일 전)
 - (방문 승인) 학교 관리자 또는 방문대상자가 방문목적 확인 및 내용 승인
 - (메시지 및 QR코드 발송) 승인 또는 거절 메시지, QR코드 발송
 - (본인 인증) QR코드로 본인 인증 후 학교 출입
- 향후 추진 계획
 - 2024.5. ~ 6월 중 만족도조사 실시 및 효과성 분석후 향후 추진계획 수립 예정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온라인 기반으로 구축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으로 학교 방문이나 담임 교원 등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선이나 방문 예약 등의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5) 서울시교육청 의견에 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에 관하여 법령과 내용이 중복되는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하고, 학교 출입 제한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 등은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제2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088, 2024.4.15.).⁶⁾

○ 이와 관련하여 안 제6조부터 제12조가 「교원지위법」과 상당 부분

5)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이 제출한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시범운영 사업 개요」를 정리한 것임.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675번, 2024.4.15. 제출)

6)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행정관리담당관-4088, 2024.4.15.)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교직원 및 일반시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안 제15조제2항을 수정하여 학교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학교규칙에 위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3항과⁷⁾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의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민 등의 출입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하는 입법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	----------------	-------	----------------

7)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8)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